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53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B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B의 어머니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이 2018. 9. 16.

사망하였고,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B을 포함한 두 자녀가 있다.

다. B은 2018. 9. 16. 당시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세목	적요	부과일	납기일	금액
지방소득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	2018. 4.	2018. 5. 31.	25,041,150원
주민세	2018년 개인균등분	2018. 8.	2018. 8. 31.	12,500원 (교육세 2,500원 포함)
주민세	2017년 개인균등분	2017. 8.	2017. 8. 31.	12,500원 (교육세 2,500원 포함)
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	2017. 12.	2017. 12. 31.	1,552,560원
지방소득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	2017. 12.	2017. 12. 31.	3,734,450원
지방소득세	2013년 귀속 종합소득	2017. 12.	2017. 12. 31.	5,369,320원
지방소득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	2016. 5.	2016. 5. 31.	8,138,440원
합 계				43,860,920원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9. 16.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모두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B의 2018. 9. 16.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조세 채무 외에 금융기관에 대해 약 441,024,000원의 채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B에게 부동산 구매자금을 지급하였고, B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부동산 구매자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8. 9. 16.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선화

<별 지>

목 목

[토지]

1. 충청남도 서산시		답 2940㎡ 중 지분 2분의 1
2. 충청남도 서산시		답 3020㎡ 중 지분 2분의 1
3. 충청남도 서산시		답 3015㎡.
4. 충청남도 서산시		답 707㎡.
5. 충청남도 서산시		답 3420㎡.
6. 충청남도 서산시		답 400㎡.
7. 충청남도 서산시		대 1470㎡.

[건물]

- 충청남도 서산시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8.94㎡ 골.

